

2020년 2학기 일반과정 운영프로그램 안내

* 신청기간 : 2020년 08월 03일 ~8월 31일

* 수강기간 : 2020년 09월 07일 ~ 12월 11일(과정별로 교육기간 및 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전화접수 : 031-612-9244, 612-9242, 612-9247. * 팩스접수 : 031-610-8725 *이메일 : lifelong@kookje.ac.kr

구분	교과목명	교육내용	교육시간	요일	교육기간	수강료
자격 취득 과정	타로심리상담사2급	상담의 기법 및 자가치유를 위한 타로심리상담 이론 및 상담 기법 배우기	14:00~17:00	금	7주	25만원
	명품양복제작반	대한민국 명장과 함께하는 양복제작 전문가 과정(최상위 실무과정)	10:00~17:00	월~금	4주	50만원
	우드버닝체험지도사 자격증과정	그림의 기초인 드로잉기법을 이해하고 캘리그래피의 이해와 작업이 가능하며, 목공의 기초와 목재의 종류와 쓰임에 대해 안다.	A반 10:00~12:00 B반 18:00~20:00	수	12주	25만원
	캘리그래피 과정	기초적인 선긋기와 자모음을 익히고 글자의 균형과 강약, 느낌, 구성, 공간감각을 느끼고 예쁜 글씨를 모방함으로써 다양한 감각을 익히도록 한다. 아울러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 봄으로써 재미와 성취감을 도모한다.	10:00~12:00	화	16주	24만원
	컬러 테라피 전문가 과정	색채의 전달을 통해 정서적, 정취적인 안정을 얻는 방법을 익혀 생활현장에서 활용하기, 컬러테라피 이론의 이해와 실천 프로그램을 숙지할 수 있는 실기	18:30~21:00	화,목	4주	30만원
	시니어운동지도사 1급 & 실버체조지도사 1급	실버 건강체조,시니어라인댄스,실버 레크레이션,실버 웃음치료분야의 컨텐츠교육 건전한 실버 여가문화프로그램 보급 자격취득후 강사 연수를 통해 강사 자질 향상	15:30~17:30	화	15주	30만원
	노후설계사, 웰다잉 강사 지도사 자격증 과정	고령화 노령화로 인한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지수도 높이는 노후설계를 위한 역량높은 강사양성	14:00~16:40	화	14주	25만원
	전래놀이 지도사 자격증 과정	놀이는 위라벨 시대의 현대인에게는 필수이며 잘 놀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	13:30~16:10	수	12주	20만원
	(치매예방)실버놀이&노인여가활동지도사	강의 수료 후 요양기관, 실버케어 및 노인여가활동지도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인여가활동지도사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한다.	10:00~12:00	목	12주	25만원
	한방꽃차소믈리에 자격증과정	야생화와 식용 꽃을 재료로 꽃차 제다 교육으로 꽃차 소믈리에 전문가를 양성한다 꽃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실습, 한의학적 효능에 대한 정보를 폭넓게 배운다 꽃차에 소믈리에 수료 후 취미, 판매, 사범 등으로 활동 할 수 있다.	12:00-15:00 16:00-19:00	화	15주	35만원
교양 취미 과정	부동산 경매실무	경매전문가 및 전문투자자 양성을 목표로 부동산경매, 법원실무, 권리분석, 수익분석, 명도분석, 배당, 감정평가, 임의, 강제경매, 농지, 명도 및 대지권 관계 등의 이론과 실무를 현장경험 위주의 교육 과정	19:00~21:00	수	10주	25만원
	알고싶은건반	수강 학생 수준에 맞는 기본 이론과 실기를 학습하여 실기능력 향상	10:00~13:00	수	12주	25만원
	쉽게 배우는 편 라인댄스	건강한 움직임, 신체사용원리, 리듬감, 창의적 신체표현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신체를 건강하게 도와주는 운동입니다.	19:00-21:00	화	15주	25만원
	영어를 배워 자녀에게 가르치는 법	-직접 영어를 배워 자녀를 가르치고자 하는 학부모 대상 -여행이나 취미를 위해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기초학습자 대상	A반 화,목 (13:00-14:00) B반 화,목 (14:00-15:00)	화,목	12주	25만원

※ 과정별 수강인원이 적을 경우 폐강될 수 있음. ※ 각 과정 재료비 교재비 및 시험응시료는 개별부담

*수강료 : 개강 결정시 개별통보

*환불규정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학습비 반환 기준(별표3)

구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규정
학습비 징수 1개월 이내	수업시작 전	납부학습비의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 지나기 전	납부학습비의 2/3 해당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지나지 전	납부학습비의 1/2 해당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지난 후	반환하지 않음
학습비 징수 기간 1개월 초과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